

##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진료수가 신설과 기대효과

송윤아 연구위원

국토교통부는 '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'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,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.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.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불필요한 시술과 청구단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

- 국토교통부는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를 신설하고. 이를 9월 11일부터 적용하도록 안내함¹)
  - 대부분의 한방물리요법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항목으로, 자동차보험에서 정해 진 금액 또는 상대가치점수 없이 실제소요비용으로 청구되어 왔음<sup>2)</sup>
    - 자동차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항목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도 보장함
  -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초음파·초단파·극초단파요법 등 7개 한방물리요법에 상대가치점수를 부여함(〈표 1〉참조)³)
    -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부터 한방물리요법을 12개 코드(허-2-1, 93023~93034)로 세분 화하여 청구하도록 함<sup>4)</sup>

<sup>1)</sup> 국토교통부,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(자동차운영보험-4737호)

<sup>2)</sup> 경피경근온열요법, 경피적외선조사요법, 경피경근한냉요법은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임. 자세한 내용은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〈별표 2〉참조

<sup>3)</sup> 상대가치점수는 의료행위의 가치를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간·노력 등 업무량, 인력·시설·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 여의 위험도를 고려해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, '진료수가 = 상대가치 점수 × 종별가산율 × 환산지수(점수 당 단가)'임

<sup>4)</sup> 국토교통부,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(자동차운영과-3554호)

- 또한 치료실 요건. 시술자. 시술기준 등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세부시술기준을 마련함
  -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의료기관의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진료수가를 산정

〈표 1〉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변화

적용일자 2015, 9, 31,								
2015 0 21	내용							
2015. 9. 51. 이전	• 한방물리요법에 단일 코드(허-2, 49020)적용하고 실제소요비용 청구							
2015. 10. 1	<ul> <li>모든 한방물리요법이 동일 코드(허-2, 49020)로 청구되면서 청구 및 심사의 정확성이 떨어져 혼란 →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행위분류 및 산정기준 알림(자동차운영과 -3554호)</li> <li>2015년 10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 행위분류 세분화(허-2, 49020 → 허-2-1, 93023~93034)</li> <li>세부산정기준 마련</li> </ul>							
2017. 9. 11	험진료수가 한방물	2, 49020)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실제소요비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(자동차운영보산정하던 7개 항목에 상대가치점수 부여 등 초음파·초단파·극초단파요법[1일당] 경피전기자극요법(TENS) 경근간섭저주파요법(ICT)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 [1일당]-1부위 도인운동요법[1일당]-2부위 이상 근건이완수기요법 [1일당]-2부위 이상						

- □ 그동안 자동차보험의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 부재는 한방물리요법의 청구단가 상승 및 진료비 급증과 의료기관 간 높은 진료비 편차를 초래하였음
  - 2014~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과 한의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는 연평균 197% 증가하였는데, 이는 한방물리요법을 이용하는 환자 수와 한방물리요법의 단위가격 상승에 주로 기인함(〈표 2〉참조)
    - 2014~2016년 기간 동안 자동차보험에서 한방병원에 지급한 한방물리요법 통원진료비는 연평균 260% 증가하였으며, 동기간 환자 수는 연평균 66%, 청구단가는 125% 증가함(〈표 3〉참조)

- 또한 동일상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순위별로 상·하위 10% 환자 그룹을 비교한 결과, 행위별
   진료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의 환자 간 진료비 편차가 현저히 높게 나타남
  - 2016년 한방병원을 이용한 S134(경추 염좌 및 긴장) 환자의 한방물리요법 진료비를 살펴보면, 상위 10%의 평균진료비는 654,073원, 하위 10%의 평균진료비는 4,443원으로 상·하위 10% 환자 그룹 간 진료비 편차가 147배로 매우 높게 나타남<sup>5)</sup>

〈표 2〉2014~2016년 자동차보험 한방비급여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

구분	첩약	추나요법	약침	한방물리요법	기타
한방병원	39.6%	26.4%	47.1%	197.3%	32.0%
한의원	25.6%	25.9%	35.4%	47.5%	34.6%

주: 한방의료기관은 한방병원과 한의원을 의미함
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(표 3)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비 구성

(# 0) MONITE COENTENT TO									
구분		총진료비	연평균 증가율(2014 <sup>4</sup>	1인당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(2014~2016년)					
		총진료비	환자 수	1인당 진료비	1인당 청구건수 (진료이용량)	청구건당 진료비(청구단가)			
한방 병원	입원	119.6%	35.4%	62.1%	3.9%	56%			
	통원	259.9%	65.9%	116.9%	-3.8%	125.4%			
한의원	입원	48.2%	22.8%	20.7%	-0.4%	21.1%			
	통원	47.5%	12.8%	30.7%	-1.1%	32.2%			

주: 1인당 진료비 = (청구건수/화자 수) × (충진료비/청구건수) = 1인당 진료이용량 × 청구단가

자료: 건강보험심사평가원

## ■ 금번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신설은 진료비 급증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압력을 약화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인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됨

- 2016년 기준 자동차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1조 6,586억 원 중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(290억 원)가 차지하는 비중은 1.7%로 미미하기 때문에, 진료수가 신설에 따른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으나 적어도 한방물리요법 진료비 급증에 따른 보험료 인상압력은 통제될 것으로 보임
- 더불어 자동차보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한방의료기관에서 비용산정목

<sup>5)</sup> 전술한 편차는 전체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비 편차를 나타낸 것으로 동일 상해등급 내 동일상병 환자 간 진료 비 편차는 이보다 작을 수 있음

록표와 산출근거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나 산정한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의 마찰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kiri